



In depth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재무보고 A-Z

Publication date: 2023년 8월 4일

GX In brief INT2023-06

Key points

공급자금융약정은 회사들에게 운전자본 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회사의 부채, 현금흐름 및 유동성 위험 노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이 투자자에게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4 년부터 IFRS 에 따른 재무보고는 이러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재무보고 A-Z 는 공급자금융약정을 설명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배경
2. 범위: 공급자금융약정이란 무엇인가?
3. 인식 및 제거: 매입채무를 제거해야 하는가?
4. 측정: 부채의 측정에 영향이 있는가?
5. 표시: 재무상태표
6. 표시: 현금흐름표
7. 공시: 어떠한 공시가 필요한가?
8. 공시 사례

1. 배경

운전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회사는 매입채무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여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회사(구매자), 공급자 및 은행(또는 기타 금융제공자)간 약정의 하나의 예입니다.

(1) 구매자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구매자는 청구서 상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보다 더 늦은 날에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함;	(2) 은행이 구매자의 지급대리인으로서 구매자를 대신하여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고, 은행이 지급기일에 공급자에게 지급함.	(3) 공급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고자 함.
---	--	--

이러한 약정은 규모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구매자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뿐만 아니라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의 표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 회계처리 시 약정의 조건에 대한 판단과 신중한 분석이 종종 필요합니다. 기본 원칙은 중요한 약정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AS 1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정보가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중요한지를 평가한다.”

PwC 견해

투자자는 공급자금융약정의 규모와 주요 조건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약정이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IASB 지침

어떤 지침?	언제 발표되었나요?	언제 적용되나요?
공급자금융 - 제거 및 표시 요구사항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2020 년 12 월	2020 년 12 월 이후
공급자금융 - 공시 요구사항 (IAS 7 및 IFRS 7 에 대한 IASB 개정)	2023 년 5 월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2. 범위

공급자금융약정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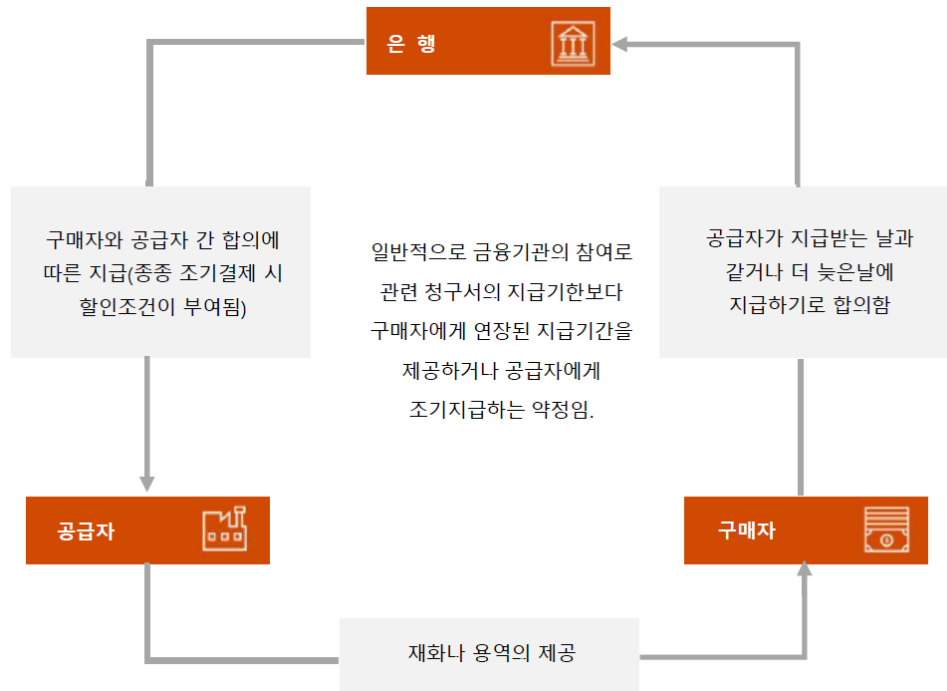
공급자금융약정은 ‘역팩토링’, ‘공급망 금융’ 또는 ‘매입채무 금융’ 등으로 불립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약정의 이름이 아니라 그 특징을 통해 식별됩니다. 주요 특징은 세 당사자(즉, 구매자, 공급자 및 금융제공자)가 적어도 한 당사자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약정이 공급자금융인지 여부는 거의 분석하지 않아도 분명하게 식별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공급업체의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섹션 7 참조), IFRS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하나 이상의 금융제공자가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기업은 공급자가 지급받는 날과 같거나 더 늦은 날에 금융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약정은 관련되는 청구서의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기업에 연장 지급조건을 주거나 기업의 공급자에게 조기 지급조건을 준다.”

공급자금융약정의 주요 단계



일반적인 공급자금융약정에는 다음 단계의 대부분 또는 전부가 포함됩니다.

1.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구매자의 매입채무와 공급자의 매출채권이 발생합니다.
2. 구매자는 매입채무를 확인합니다. 즉, 금액, 지급일, 재화가 인도되었다는 사실 및/또는 금융제공자와 합의한 일자(약정에 따른 매입채무의 지급일 또는 후)까지 매입채무를 결제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3. 공급자의 매출채권은 구매자가 대금을 은행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은행에 양도되거나 은행에 대한 채권으로 대체됩니다.
4. 공급자는 원래의 지급일 또는 그 전에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5.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청구서의 지급일 또는 그 후에 은행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침에서 논의되는 다른 유형의 금융은 공급자금융약정과 일부 유사한 특징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특징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시 요구사항의 목적상, 다음은 구매자를 위한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닌 예 또는 계약입니다.

1. 기업의 채권 또는 재고자산에 자금을 조달하는 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2. 다음과 같이 구매자를 위한 신용보강에만 해당하는 약정 또는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정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예를 들어;

- 가. 보증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을 포함한 금융보증; 그리고
 - 나.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되는 신용카드
3. 금융기관이 재화를 구매 및 통제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재화를 기업에 본인으로 판매하는 일부 상품 중개 계약

PwC 견해

약정이 공급자금융약정인지 여부를 분석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지침의 재무보고 요구사항은 구매자를 위한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구매자를 포함하여 이러한 약정에 관련된 세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구매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약정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닙니다.
- 약정에는 구매자 또는 공급자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이 있습니다.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에 대하여 광범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기업이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조달하는 약정으로 범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기업은 공급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했을 수 있는 다른 조치(예: 매출채권 팩토링)를 식별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IAS 7에 대한 결론도출근거 문단 31-33은 IASB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인식 및 제거

매입채무의 인식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매입채무를 인식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매입채무의 제거

IFRS 9 제거 요건이 매입채무에 적용됩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 포함된 매입채무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모든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질문 중 하나는 구매자가;

-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매입채무를 계속 인식하는지, 또는
- 매입채무가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될 때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로 대체하는지입니다.

재무상태표 표시에 대한 지침은 섹션 5를 참조하십시오.

IFRS 9을 적용하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만 제거됩니다. [IFRS 9 문단 3.3.1]

금융부채(또는 그 일부)는 채무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됩니다. [IFRS 9 부록 B 문단 3.3.1]

- 채무자가 일반적으로 현금, 그 밖의 금융자산,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부채(또는 그 일부)를 이행한 경우; 또는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부채(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일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받은 경우

또한 기존 금융부채(또는 그 일부) 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은 최초의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합니다. [IFRS 9 문단 3.3.2]

따라서 공급자금융약정의 구매자는 해당 약정이 새로운 약정으로 간주될만큼 매입채무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44.102.2 – Factors to consider when determining whether a supplier financing arrangement results in the derecognition of the trade payables

구매자가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현금흐름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섹션 6 참조).

PwC 견해

제거여부를 분석할 때, [FAQ 44.102.2](#)에 언급된 모든 지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일부 지표는 다른 지표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대채무, 교차채무불이행, 보증을 포함하는 조항은 기존의 매입채무를 제거해야 하는 지표가 됩니다.

4. 측정

구매자가 기존의 부채(매입채무)를 제거하고 은행에 대한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참조: 섹션 3), 다음을 인식합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부채; 그리고
- 기존 부채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 차이에 기초한 손익 [IFRS 9 문단 3.3.3]

5. 표시_재무상태표

IAS 1은 재무상태표에 부채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는 그 성격이나 기능이 다른 부채와 충분히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IAS 1 문단 54에서는 이러한 부채를 다른 금융부채와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에 추가 또는 기존 항목의 세분화가 필요합니다[IAS 1 문단 55].

공급자금융약정의 구매자는 IAS 1을 적용하여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어디에 표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공정한 표시

거래의 효과를 충실하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기업의 재무상태를 공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선택한 항목에 대한 표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IAS 1 문단 15].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하고, 유사하지 않은 항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IAS 1 문단 57].

IFRS 9에 따라 제거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에 대한 부채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섹션 3 참조), 부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에 포함;
- 은행 부채, 차입금 또는 유사하게 표현된 항목에 포함; 또는
- 다른 항목과 별도의 개별 항목.

2020년 IFRS 해석위원회(‘위원회’)는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표시에 대한 안건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안건 결정에서는 기업의 의무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매입채무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할 부채를 나타냄
- 청구되었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 그리고
-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서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

따라서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부채가 매입채무와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진 경우에만(예: 이러한 부채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주기에서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인 경우)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일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 부채의 규모, 성격 또는 기능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FAQ 44.102.2](#)에서 제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설명하고 있지만, 매입채무가 제거되지 않더라도 부채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별도로 표시할 지 결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FAQ 44.102.2 – Factors to consider when determining whether a supplier financing arrangement results in the derecognition of the trade payables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시와 관련한 판단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몇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 약정이 없으면 제공되지 않았을 추가 담보가 약정의 일부로 제공 되었는지; 그리고
- 그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조건이 그 밖의 매입채무 조건과 다른 정도

IFRS 9에 따라 제거되는 경우

공급자에 대한 기존의 부채가 제거되고(섹션 3 참조) 은행에 대한 새로운 부채로 대체된 경우에도 위에 제시된 표시에 대한 고려사항('IFRS 9에 따라 제거되지 않는 경우')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로는 새로운 거래상대방(금융제공자를 대표함)과의 새로운 부채의 성격은 매입채무와 일반적으로 상당히 다르므로 은행 차입금(또는 유사하게 설명된 항목) 또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무상태표 재분류 관련 공시

2023년 IAS 7 개정의 일부로 IASB는 공급자금융약정과 관련된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에 대한 특정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했습니다(섹션 7의 IAS 7 공시 요구사항 3번 참조).

6. 표시_현금흐름표

공급자금융약정의 구매자는 현금흐름표에서 이러한 거래의 현금흐름 표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2020년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에서는 약정의 일부인 부채의 성격에 대한 기업의 평가가 관련 현금흐름이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부채를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인 매입채무 또는 기타 채무로 간주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유출을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합니다. 반대로, 관련 부채가 기업의 차입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련 부채가 매입채무 또는 기타채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채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합니다.

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할 때 구매자에게 현금흐름이 발생합니까?

첫번째 판단은 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할 때 구매자에게 현금흐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2020년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에 따르면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로 청구서가 인수될 때 구매자에게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이 발생하면 구매자는 해당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표시합니다.

그러나 IAS 7은 다른 당사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상황에서 구매자에게 현금흐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기업이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은행 계좌 금액의 변동이 현금흐름으로 여겨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 기업의

은행 계좌를 통해 이전되지 않더라도(예를 들어, 기업이 다른 당사자에게 기업을 대신하여 현금을 이전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기업에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 현금흐름표에 표시되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비현금 거래와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현금 거래에서는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예: 리스 약정을 통해 리스개시일에 리스 제공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취득하는 거래). 공급자금융약정에는 현금흐름(즉, 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이 있으며 구매자는 자신이 해당 현금흐름의 당사자인지(즉, 현금흐름이 구매자에게 발생하였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할 때 구매자에게 현금흐름이 발생함

경우에 따라 구매자는 은행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유출과 재무활동 현금유입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은행이 실질적으로 구매자를 대신하여 지급을 대신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현금흐름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이후에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현금흐름은 재무활동 현금유출로 표시됩니다.

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할 때 구매자에게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음

다른 경우에 구매자는 은행과 공급자 간 현금흐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의 현금흐름표에 유일하게 표시되는 현금흐름은 구매자가 은행에 지급할 때의 현금유출입입니다.

이는 재무활동 현금유출 또는 영업활동 현금유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적용된 판단이 중요한 경우 IAS 1 요구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공시되어야 합니다(다음 섹션 참조).

PwC 견해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에서 공급자금융약정의 분류 및 표시를 고려할 때, 기업은 관련 감동당국의 견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SEC 스태프의 견해는 공급자금융약정의 결과로 매입채무의 경제적 실질이 변경된 경우 자금 조달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입채무는 재무상태표에서 차입금으로 재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SEC 스태프의 입장은 보고기업이 영향을 받는 해당 매입채무와 관련된 영업활동 현금유출 및 재무활동 현금유입을 반영(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매자가 영업활동 현금유출 및 재무활동 현금유입을 반영하지 않고(위에서 설명한 미국 SEC 스태프의 견해와 달리)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부채를 차입금로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비현금 변동을 명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비현금 변동이 투자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또는 잉여 현금흐름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비현금 변동이 주석에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다음 예를 고려하십시오.

- 1 월 1 일: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가격이 50 인 재화를 받고 매입채무를 계상합니다. 이 날에는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으며, 청구서의 지급일은 3 월 31 일입니다.

- 2 월 1 일: 매입채무가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되고 구매자는 재무상태표에서 '매입채무'를 '단기차입금'으로 재분류합니다.

- 3 월 31 일: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에 따라 은행은 청구서 지급일에 공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5 월 31 일: 공급자금융약정의 조건에 따라 구매자는 2 개월 후 은행에 지급합니다.

- 보고기간은 6 월 30 일까지의 6 개월입니다.

- 단순화를 위해 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금액(즉, 50)을 구매자가 은행에 지급하고 화폐의 시간 가치 또는 수수료를 무시한다고 가정합니다.

재무상태표			
재무상태:	1 월 1 일 매입채무가 인식됨	2 월 1 일 매입채무가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됨	5 월 31 일 구매자가 금융제공자에게 지급
매입채무	50	-	-
단기차입금	-	50	-

기업이 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현금흐름이 발생했다고 평가하면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	2 월 1 일 매입채무가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됨	3 월 31 일 금융제공자가 공급자에 지급	5 월 31 일 구매자가 금융제공자에게 지급	6 월 30 일까지의 기간 합계
영업현금흐름	현금흐름 없음	(50)	-	(50)
재무현금흐름	비현금이체	50	(50)	-
총 현금흐름				(50)

대안으로 기업이 은행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경우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	2 월 1 일 매입채무가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됨	3 월 31 일 금융제공자가 공급자에 지급	5 월 31 일 구매자가 금융제공자에게 지급	6 월 30 일까지의 기간 합계
영업현금흐름	현금흐름 없음 비현금이체	현금결제 이루어지지만 구매자에게는 현금결제가 아님	-	-
재무현금흐름			(50)*	(50)
총 현금흐름				(50)

* 설명을 위해 구매자가 재무활동 현금유출로 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함(다른 접근 방식도 허용될 수 있음).

PwC 견해
이 사례에서 매입채무의 제거 및 단기차입금의 인식시점은 현금흐름표상 현금흐름의 발생시점과 상이합니다. 실제로 기업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매입채무의 제거 및 단기차입금의 인식과 같은 날에 현금흐름표에 현금흐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간편법의 적용이 위의 예에서 입증된 회계처리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때 그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FAQ 7.20.6 - How should the cash flows in respect of a reverse factoring arrangement be classified in the cash flow statement?

FAQ 7.12.1 - Factors to consider when assessing if another entity is acting on behalf of the reporting entity for presenting cash receipts or payments in the cash flow statement

7. 공시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경우 IFRS 회계기준은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명시적인 공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AS 1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일반적인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이 기간 동안 공시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0년 위원회 안건결정에도 이와 관련된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은 2023년 5월에 IASB가 발행한 공시 요구사항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공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첫 해에 완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사항

공시 요구사항의 일반적인 목적은 기업이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 가.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대한 공급자금융약정의 영향;
- 나. 기업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된 정도와 약정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부채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시(IAS 7)

기업은 다음을 공시해야 합니다.

1. 공급자 금융약정의 조건(예: 연장된 지급조건 및 제공되는 담보 또는 보증). 개별약정의 조건들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개별약정의 서로 다른 조건을 공시해야 합니다.

PwC 견해

질적 정보는 약정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약정이 본질적으로 다른 약정과 다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거나 고유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유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분화될 수 있는 약정의 예로는 구매자가 비슷한 조건의 다른 공급자금융약정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율과 같은 특약조건을 가진 약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통합표시가 공급자 금융제공자의 유동성 위험 집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 비슷한 조건을 가진 5개의 공급업체 금융계약이 있지만 5개 중 하나의 제공업체에 상당한 집중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 유동성 위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FRS 7 문단 39(c)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공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중된 자금 출처가 문단 B11F(d)의 유동성 위험 요인의 예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IFRS 7의 문단 IG18A(a)(iv)에서도 강조 표시됨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섹션 A의 공시사례 참조

2. 각 보고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의 정보:

- 가.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그러한 부채가 표시되는 항목
- 나. 2(가)에 따라 공시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재무제표 항목(공급자가 이미 금융제공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섹션 B의 공시사례 참조

- 다.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금융부채와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아닌 비교대상 매입채무에 대한 지급기한의 범위. 예를 들어,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가 아닌 비교대상 매입채무는 30일 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반면,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대금 지급기한은 60 일 이내일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 매입채무는, 예를 들어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금융부채와 동일한 비즈니스 라인 또는 관할권 내의 매입채무입니다. 만약 지급기한의 범위가 넓은 경우 기업은 해당 범위에 대한 설명을 공시에 추가하거나 지급기한의 범위를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예: 세분화 범위).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섹션 C 의 공시사례 참조

PwC 견해
기업은 공급업체가 이미 지급받은 장부금액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그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설정하는 데 초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가능한 빨리 금융제공자와 합의하여 필요한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2(가)에 따라 공시되는 금융부채(즉,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 및 영향. 비현금 변동의 예로는 사업결합, 외환차이 및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기타 거래가 있습니다. 이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현금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항목 간의 재분류에도 적용됩니다. (위의 섹션 5 와 섹션 6 참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섹션 D 의 공시사례 참조

PwC 견해
비현금 변동의 공시는 공시 요구사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IASB 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정할 때 투자자로부터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비현금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가 없으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명백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급자 금융약정 IAS 7 공시사례

주석 X – 공급자 금융약정			
	기업은 다음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유형 A ● 유형 B		
A	부채의 장부금액	보고일 20X5	보고일 20X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로 표시	CU 1,500	CU 1,000
	● 그 중 공급자가 지급받은 금액	CU 1,050	CU 800
B	금융부채로 표시	CU 1,000	CU 750
	● 그 중 공급자가 지급받은 금액	CU 900	CU 650
지급기한의 범위			
C	약정의 일부인 부채	청구일로부터 85~90 일	청구일로부터 80~90 일
	약정의 일부가 아닌 비교대상 매입채무	청구일로부터 60~70 일	청구일로부터 60~65 일
D	비현금 변동		
	어느 기간에도 중요한 사업결합이나 외환차이는 없었으며, 20X2 년과 20X1 년에 매입채무에서 차입금으로 각각 CU 1,200 과 CU 900 의 비현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에 적용될 수 있는 IAS 7의 기타 공시 요구사항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거래는 기업의 현금흐름표에서 제외됩니다 [IAS 7 문단 43]. 현금유입 또는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재무활동 거래는 재무활동에 대하여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다른 부분에 공시합니다[IAS 7 문단 43]

또한 IAS 7 문단 44A~44E에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의 공시를 모두 요구합니다.

경과규정

공시 요구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조기적용이 허용됨), 개정내용 적용 첫해에는 다음과 같은 완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가. 비교정보의 공시: 개정내용을 적용한 첫해에는 비교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2024년 12월 31일 보고기간말 2023년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나. 특정 기초 잔액의 공시: IAS 7(위의 공시요건 2번 참조)의 일부 양적 공시는 일반적으로 각 보고 기간의 기초 및 기말잔액의 공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2(나)와 2(다) 공시에 존재할 수 있는 복잡성을 고려하여 적용 첫 해에 기업은 해당 공시가 연말에만 요구되는 완화된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 다. 중간재무제표: 적용 첫 해의 연간 회계연도에 대해서만 공시를 요구하며, 중간재무제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동성 위험의 노출에 대한 공시(IFRS 7)

IFRS 7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기업이 노출된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IFRS 7에서는 유동성 위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업이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려움에 겪게 될 위험”*

IASB는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일부가 공급자금융약정 때문에 일부 금융제공자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을 위험의 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를 하는 예시로 포함하도록 IAS 7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공시는 기업이 보유한 부채의 상당 부분이 소수 금융제공자 중 하나의 금융제공자와 체결한 공급자금융약정의 일부인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 약정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기업에 미칠 영향을 투자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기업이 재무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융제공자가 하나 이상의 약정을 철회할 권리가 있는 경우).

PwC 견해

유동성 위험 공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 금융약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설명, 계약종료(해당되는 경우)
- 공급자 금융제공자의 재정 상태; 그리고
- 공급업체 금융계약의 지속적인 가용성에 대한 구매자의 의존 정도.

유동성 위험 공시에 대한 추가 지침 및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PwC MoA 47.107-110](#)

IAS 1 추가 공시

IAS 7 및 IFRS 7에서 요구하는 공시 이외에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대한 공급자금융약정의 영향에 대한 추가 공시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업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약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정보가 해당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IAS 1 문단 122].

8. 공시사례

공급업자금융약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IFRS 기준에 따라 일부 일반적인 공급자금융약정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 44.102.5 – Presentation of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3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